

‘노동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단체

이 정 희*

우리는 기업 단위, 경제적 분배 중심의 공적 대표성이 취약한 현행 단체교섭 구조를 업종별로 재구성하고 업종별 단체협약의 확장성을 보증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사용자단체의 개념과 역할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용자단체(Employers' Association 또는 Employers' Organization)는 집단적인 사용자들의 대표체를 말한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이슈에 대해 전국 단위 혹은 산업·업종 단위로 사용자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고 이해를 관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이다. 한국 노사관계 연구에서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는 풍부하지 않다. 이는 기업별 노사관계가 지배적인 현실에서 사용자단체를 검토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고, 사용자단체를 단체교섭 중심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사업자단체(Business Association 또는 Trade Association)와는 별개의 조직인 것으로 이해해 온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적지 않은 수는 “한국에서 어떤 조직이 사용자단체인가?”라는 질문에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따라 설립된 금속·보건의료·금융산업 사용자단체만을 떠올릴 것이다. 혹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더 꼽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들 단체를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우리는 “단체교섭을 하는 단체인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 대신에 ‘노동관계 당사자’로 활동하는 단체를 ‘사용자단체’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단체성이 인정되면 그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출간된 사용자단체에 관한 연구들¹⁾에서 논한 바 있듯이 1997년 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 관련 조항이 아니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조항에서 사용자단체를 정의함으로써 사용자단체 개념을 단체교섭 담당자에 한정하지 않고 널리 노동관계 당사자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 참여 여부를 불문하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의사결정기구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jhlee@kli.re.kr).

1) 이창근·이정희·허인(2018),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와 시사점』, 민주노총 총서 053; 박제성(2019), 「사용자단체의 법리: 권한과 책임의 균형」, 『노동정책연구』, 19(4); 이창근·박제성·박주영(2019), 『사업자단체의 ‘사용자단체성’ 연구』, 민주노총 총서 057.

인 각종 정부 위원회에 사용자 및 관련 업종의 이해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그 단체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 건설업, 대리운전업, 영상제작업, 화물업 등에서는 업계 이해를 대표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노동관계 협의만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당사자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우리가 사용자단체에 주목하는 이유는 사용자단체의 존재가 심화되는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연대정책으로서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규범력 확장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업종별 단체교섭은 기업 횡단적인 임금률의 설정을 통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의 기제가 될 것이다. 또한 업종별 단체협약은 기업 내부 노동시장 체제를 약화시키면서 초기업적(사회적) 제도들이 노동시장을 규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다.²⁾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음에도 업종별 교섭은 확산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사용자단체 역할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업종별 교섭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대는 교섭 당사자성 부정 혹은 교섭용 사용자단체의 별도 설립과 같은 회피적 선택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번 호 『노동리뷰』 특집에서는 ‘사용자단체의 의의와 역할’에 관한 3편의 글을 소개한다. 박제성은 사용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업종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사용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종별 협약의 교섭과 체결이라는 점을 논하면서 이 협약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공적 기제로 기능하게 하는 법적 장치로 만인효(erga omnes)와 단체협약 구속력 확장을 설명한다. 손영우는 협약의 내용이 공정 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규칙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는 프랑스의 접근법과 사용자단체의 대표성을 가입 기업의 수가 아닌 가입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데까지 확장한 최근 프랑스 법 개정 내용과 그 의미를 소개한다. 전인·이정희는 사례연구를 통해 3개의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 참여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연구 대상 모두 해당 업종 내 표준적인 임금·노동조건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즉 사용자단체성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에는 사용자들이 각종 노동정책에 개입하거나 이해 당사자와 협의하는 것은 물론 업종별 단체교섭에서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면 정부가 외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추후 업종별 교섭 촉진과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확장, 이를 위한 공적 권위의 개입과 지원에 관한 추후 연구가 시급히 요구된다. **KLI**

2) 정이환(2019),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와 대안모색」, 장지연 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 시장정책 패러다임』, 한국노동연구원.